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7. 8. 17.>

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(제12조제1항 관련)

<table>
<tr><th>자격종별</th><th>전공과목</th><th>교직과목</th></tr>
<tr><td>유치원
정교사(2급)</td><td>50학점 이상
－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－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</td><td rowspan="5">22학점 이상
－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: 18학점 이상(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)
－교육실습 : 4학점 이상(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)</td></tr>
<tr><td>초등학교
정교사(2급)</td><td>50학점 이상
－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
－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</td></tr>
<tr><td>중등학교
정교사(2급)</td><td>50학점 이상
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－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</td></tr>
<tr><td>특수학교
정교사(2급)</td><td>80학점 이상
－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: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－유아교육(유치원), 초등교육(초등), 표시과목(중등) 관련 38학점 이상 :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, 교과교육 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※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14학점, 5과목 이상 포함)</td></tr>
<tr><td>보건교사(2급)
영양교사(2급)
사서교사(2급)
전문상담교사(2급)</td><td>50학점 이상
－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
－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</td></tr>
<tr><td>준교사</td><td>50학점 이상
－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
－기본이수과목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</td><td>10학점(5과목) 이상
－교직이론</td></tr>
<tr><td>실기교사</td><td>50학점 이상
－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</td><td>4학점(2과목) 이상
－교직이론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※비고
1.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2.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</td></tr>
</table>